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3. 3. 13 조례 제1914호
일부개정 2017. 3. 12 조례 제2242호(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17. 9. 27 조례 제2290호(제명개정)
전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91호
일부개정 2020. 11. 6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2. 4. 19 조례 제2863호
일부개정 2025. 4. 7 조례 제324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허가 및 신고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 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21조에 따른 광명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22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1. 6>

1. 삭제 <2020. 11. 6>

2. 삭제 <2020. 11. 6>

3. 삭제 <2020. 11. 6>

③ 시장은 현수막·벽보·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 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6>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6>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

-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 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 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 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

가. 높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나. 표시기간: 60일 이하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

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제8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기준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따른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공고하는 사항

5.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 병기가 허용되는 구역의 범위
2.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광고물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4장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및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제1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① 시장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제8호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6>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의 법인·단체가 신청할 경우 재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이에 응모자가 단독일 경우 위원회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6〉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단서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1. 6〉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 11. 6]

제12조(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적절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0. 11. 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사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3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의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6>

② 시장은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6>

제15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1. 6〉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1. 6〉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제5장 자율관리구역, 정비시범구역 및 주민협의회

제16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7조(주민협의회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8조(주민협의회회의 구성·운영) ① 주민협의회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③ 주민협의회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3. 당해 지역의 시의회 의원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회의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1. 6>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제2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제21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영 제32조 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6>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9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 및 표시 신고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장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제23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11. 6>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6.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의 수탁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6>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5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자격, 위탁기간, 수탁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수탁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에 제24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의 수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6>

제26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의 수탁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의 수탁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

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1. 6>

제8장 불법 광고물의 제거 등

제27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10조2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등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제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제출할 경우 그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6>

1. 벽보(지정게시판에 부착된 벽보 제외)
2. 전단지(옥내 및 신고 후 배포한 전단지 제외)
3. 현수막(지정게시대 부착된 현수막 제외)
4. 명함류(청소년 정서를 저해하는 내용 등의 불법광고물)

제9장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교육위탁

제31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내주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

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2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수탁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수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 업무의 수탁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⑤ 제2항에 따른 교육 업무의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1. 6>

⑥ 제2항에 따른 교육 업무의 수탁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1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⑦ 제2항에 따른 교육 업무의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⑧ 제1항부터 제7항에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10장 보칙

제33조(수당 등)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4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6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

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3.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6조(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사용료) 영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8과 같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91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6 조례 제2692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19 조례 제2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4. 7 조례 제3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정 2020. 11. 6>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제7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	개수 (면수)	규격(m) (가로×세로×높이)	주 소	이격거리

[별표 2] <개정 2020. 11. 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9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개당 20만원
- 2㎡ 이상 3㎡ 미만	개당 30만원
- 3㎡ 이상 4㎡ 미만	개당 40만원
- 4㎡ 이상 5㎡ 미만	개당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개당 55만원
- 6㎡ 이상 7㎡ 미만	개당 65만원
- 7㎡ 이상 8㎡ 미만	개당 75만원
- 8㎡ 이상 9㎡ 미만	개당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개당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개당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개당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개당 145만원
- 16㎡ 이상 18㎡ 미만	개당 165만원
- 18㎡ 이상 20㎡ 미만	개당 185만원
4) 면적 20㎡	개당 20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 당	개당 200만원에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개당 20만원
- 2㎡ 이상 3㎡ 미만	개당 30만원
- 3㎡ 이상 4㎡ 미만	개당 40만원
- 4㎡ 이상 5㎡ 미만	개당 49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개당 55만원
- 6㎡ 이상 7㎡ 미만	개당 65만원
- 7㎡ 이상 8㎡ 미만	개당 75만원
- 8㎡ 이상 9㎡ 미만	개당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개당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개당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개당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개당 150만원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개당 170만원 개당 190만원 개당 200만원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개당 200만원에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개당 30만원 개당 35만원 개당 40만원 개당 48만원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개당 55만원 개당 65만원 개당 80만원 개당 95만원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개당 110만원 개당 130만원 개당 150만원 개당 170만원 개당 190만원 개당 200만원
4)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개당 200만원에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개당 30만원 개당 35만원 개당 40만원 개당 48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개당 55만원 개당 65만원 개당 75만원 개당 85만원 개당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개당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개당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개당 150만원
- 16㎡ 이상 18㎡ 미만	개당 170만원
- 18㎡ 이상 20㎡ 미만	개당 190만원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개당 210만원
- 25㎡ 이상 30㎡ 미만	개당 230만원
- 30㎡ 이상 35㎡ 미만	개당 245만원
- 35㎡ 이상 40㎡ 미만	개당 260만원
- 40㎡ 이상 45㎡ 미만	개당 280만원
- 45㎡ 이상 50㎡ 미만	개당 290만원
5) 면적 50㎡	개당 300만원
- 50㎡ 초과하는 면적 1㎡ 당	개당 300만원에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개당 30만원
- 면적 5㎡ 이상 10㎡ 미만	개당 50만원
- 면적 10㎡ 이상 15㎡ 미만	개당 60만원
- 면적 15㎡ 이상 20㎡ 미만	개당 70만원
- 면적 20㎡	개당 75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 당	개당 75만원에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최대 100만원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개당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개당 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 · 조명탑 · 안내탑 · 일기에보탑	
- 면적 5㎡ 미만	개당 30만원
- 면적 5㎡ 이상 10㎡ 미만	개당 50만원
- 면적 10㎡ 이상 15㎡ 미만	개당 60만원
- 면적 15㎡ 이상 20㎡ 미만	개당 70만원
- 면적 20㎡	개당 8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 당	개당 80만원에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최대 100만원 이하
2) 교통안내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 · 지정벽보판 · 버스승강장 · 택시승강장 · 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 5㎡ 초과하는 면적 1㎡당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개당 150만원 개당 160만원 개당 160만원에 10만원을 더한 금액 개당 10만원 개당 20만원 개당 29만원 개당 35만원 개당 45만원 개당 50만원 개당 50만원에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벽면이용 간판에 준함
---	---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3] <개정 2020. 11. 6>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31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 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 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 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 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 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 조례 제·개 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 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 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광명시 옥외광고 심 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4] <개정 2020. 11. 6>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3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3,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3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15,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개당)	8,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35,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15,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5,000원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9,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음식 판매자동차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입간판	3,000원
파.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하. 벽보(15장마다)	3,000원
거. 전단(500매마다)	3,000원
너. 전자게시대(1건)	3,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광명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징수한다.

[별표 5] <개정 2020. 11. 6>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3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18,000원
	- 면적 5㎡ 초과 20㎡ 이하	26,000원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18,000원
	- 면적 3.5㎡ 초과 10㎡ 이하	26,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27,000원
	- 면적 50㎡ 초과 70㎡ 이하	49,000원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 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18,000원
	- 면적 10㎡ 초과 20㎡ 이하	26,000원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14,000원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수수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등)

[별표 6] <개정 2020. 11. 6>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3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7] <개정 2022. 4. 19>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개당 13만원 개당 22만원 개당 32만원 개당 42만원 개당 50만원 개당 64만원 개당 75만원 개당 100만원 개당 129만원 개당 130만원 개당 130만원에 15만원을 더한 금액 개당 8만원 개당 12만원 개당 14만원 개당 25만원 개당 33만원 개당 49만원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개당 58만원 개당 67만원 개당 79만원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개당 80만원 개당 80만원에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1)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장당 8만원 장당 12만원 장당 14만원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장당 22만원 장당 25만원 장당 32만원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장당 42만원 장당 58만원 장당 75만원
4)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장당 80만원 장당 80만원에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	법 제20조제1항제2호	
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라. 1년 이상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	법 제20조제1항제5호	
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	법 제20조제2항	
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5.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	법 제20조제1항 제1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단,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4.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5.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8] <개정 2025. 4.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제36조 관련)

구 분	사용료	비 고
가. 시민게시판(7일)	2,000원	- 1장(0.38×0.54)
나. 버스승강장(월)	50,000원 5,000원	- 1㎡ 이하 - 1㎡ 초과시 0.1㎡당 가산
다. 전자게시대(7일)	3,000원	- 12㎡ 이하
라. 기타시설		- 유사시설 간주 산정

[별지 제1호 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제3조제1항 관련)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⑮ 변 경 사 항	⑯ 비 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외광고업등록번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⑯ 주 소	⑰ 전 화 번 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m²]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증(제3조제3항 관련)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제25조제3항 관련)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광명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

구비서류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제25조제4항 관련)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별지 제5호 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제25조제6항 관련)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광 명 시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 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직인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 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제26조제1항 관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제26조제1항 관련)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 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 서식]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제27조제3항 관련)

① 일련 번호	② 광고물 종류	③ 표시 내용	④ 수량	⑤ 보관 연월일	⑥ 보관 장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당 (취급)자	⑨ 비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9호 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제27조제4항 및 제5항 관련)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제31조제4항 관련)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제31조제6항 관련)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제32조제1항 관련)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위탁사업 계획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제32조제2항 관련)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